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2022년 9월 26일 제정

2023. 3. 16. 전부개정

2024. 3.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의거하여 각 단위 학생회 및 기타 기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자치기구 및 단위에 적용됨과 동시에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1.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모든 학과의 학생회
2.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모든 동아리
3. 기타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결한 기구 및 단체

제3조(정의) 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사대상단위’란, 본 시행세칙 제2조에 해당하는 기구 및 단체를 의미한다.
- ② ‘공고’란 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온라인 공고의 경우에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사이트와 매체는 본교 학생들의 활용도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정할 수 있다.
 2. 오프라인 공고의 경우에는 사회관 207호 앞 학생회 게시판에 공고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학내 언론기관에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계’란 감사대상단위의 경제 활동 상황을 학생회칙 및 관련 세칙이 정하는 계산 방법으로 기록한 문서 또는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④ ‘재정운용’이란 감사대상단위가 집행한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 ⑤ ‘감사시행’이란 감사위원 및 감사실무원이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검사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⑥ ‘단위 대표자’란 감사대상단위의 대표자로, 학과의 학생회의 경우에는 실제의 집행을 담당했던 학과 학생회의 부학생회장을, 기타 기구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 ⑦ '회계 담당자'란 감사대상단위의 실제적인 재정운용과 회계를 담당한 자로 감사대상단위의 통장명의자를 의미한다.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를 그로 본다.
- ⑧ '소명'이란 감사의 시행중에 있어 자료의 경미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 확인 및 입증 절차를 의미한다.
- ⑨ 단위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가 일치하는 때에는, 겸직으로 본다.

제4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사회과학대학 재정운용세칙 제5조와 같다.

- 제5조(감사시행의 기한) ① 감사시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감사 시행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 감사는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한 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1,2분기를, 하반기에는 전년도 3,4분기를 감사한다.

제2절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제6조(목적)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학생회칙 및 기타 관련 세칙이 정하는 재정운용의 실제적인 집행과 이행에 있어 부정을 감시하여 학생회비의 청렴한 사용을 위하여 설치한다.

- 제7조(지위) ①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②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대의원 총회(이하 대의원 총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한다.
- ③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2인과 각 학과 단위의 학생회장 7인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는 과반수인 5인으로 한다. 다만, 결위, 해임, 사퇴 등의 이유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장은 최소 정족수를 만족하는 인원내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다.
- ③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원의 임기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9조(감사위원회의 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전반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단위에 성실한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회의에서 의결한 징계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기타 의결의 결과를 다음 학기 대의원총회에 발제하여 이를 확정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밖에 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감사대상단위에 숙지시켜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행 일시 최소 24시간 이전, 온라인 공고를 통해 참관인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참관인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참관인 없이 감사를 진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과 최종 감사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학생회칙 및 기타 관련 세칙과 감사실무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사위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감사회의의 의결로써 감사대상단위의 징계의 발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해당 임기동안의 구체적인 감사 기준 마련을 위해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령」을 심의하고, 심의를 마친 일자부터 7일 이내에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한다. 또한 의결을 받은 당일부터 48시간 이내에 감사시행령을 공포해야한다. 논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 시행 기조
2. 감사 자료로써의 인정 기준
3. 제출하지 못하는 감사자료에 대한 갈음 요건
4.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일체

제11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둔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감사회의의 의장으로 감사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 및 지휘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당해연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속한 감사위원 1인을 추천하여 호선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사위원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위원장이 지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감사위원회의 대표로서 감사회의에 상정된 각종 사무 및 의안의 결정을 위한 주재
2. 감사대상단위의 담당 감사위원의 지명
3. 감사대상단위의 담당 감사실무원의 지명
4. 삭제 <2023. 3. 16.>
5. 제17조 제6항의 감사실무원의 재감사 제청에 대한 결정
6.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공고
7. 감사시행 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운영의 주도

제12조(신분보장) 감사위원장은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대의원 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본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대상단위의 담당 감사실무원에 대한 감사 지휘
2. 감사대상단위의 재정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3.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의 흠결에 대한 판단
4. 감사회의에 감사대상단위의 징계안 상정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신이 소속하거나 소속하였던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는 담당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학생회칙 및 기타 감사시행과 관련한 세칙, 규정, 관례의 해석 및 적용
2. 감사 진행 방법, 절차, 서식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감사 업무의 체계적인 인수인계
3. 이전 감사사례의 참고를 통한 회·세칙의 해석, 소명 인정 여부 등

③ 삭제 <2023. 3. 16.>

제14조(검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회계 담당자와 단위 대표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제명) ① 누구든지 감사위원이 감사대상단위와의 관계로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감사위원을 감사대상단위의 감사로부터 제척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회의의 의결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② 감사대상단위는 감사위원의 제척으로 인한 일정 연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불이익 등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의 제척 의결은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제척할 수 없다.

④ 감사위원을 제명하려면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명의 여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감사위원은 다음 경우에는 감사위원에서 제명된다.

1. 감사위원이 학생회칙에 의한 징계의 의결이 확정된 때
2. 감사위원이 부산대학교 학칙에 의한 징계가 확정된 때

제16조(감사회의) ① 감사회의는 감사위원회 최고결기기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감사실무원 또한 감사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감사실무원은 감사회의의 서기의 직을 수행하여 감사회의의 의결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한다. 감사위원장은 제출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회의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삭제 <2023. 3. 16.>
2.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제척, 제명 등의 의결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감사실무원으로 추천한 자에 대한 동의
4.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실무원의 인원의 결정
5. 제19조의 감사 시행 전 감사계획 수립의 확정
6. 제30조의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 및 확정
7. 제31조 및 제32조의 감사대상단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8. 제43조에 따른 징계유예의 결정과 징계의 결정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판단
9. 감사위원이 제출한 징계안의 의결
10. 감사위원이 상정한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의 흠결 또는 재정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판단
11. 회계 또는 재정운용에 부정을 저지른 기구 또는 단체의 징계에 대한 대의원 총회 안건 발제
12. 감사시행과 관련한 학생회칙 및 관련 세칙의 해석 및 적용

13. 기타 학생회칙 및 관련 세칙이 정하거나 감사시행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14. 단위대표자의 변경에 대한 의결

④ 전항의 제11호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감사회의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위원은 감사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단체에 소속하거나 하였을 때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가 관여를 한 때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의 참여를 이유로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의 및 의결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감사회의 의결의 정족에 흠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감사실무원) ① 감사실무원은 학생회칙 및 기타 관련 세칙과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따라 감사위원의 지휘를 받아 감사대상단위의 회계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및 감사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서기, 감사시행에 적용되는 회칙 및 세칙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진행한다.

② 감사실무원은 사회과학대학 집행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 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 인원은 전조 제3항의 제4호에 의한다.

③ 감사시행은 감사실무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④ 감사실무원 중에 감사실무장을 둘 수 있다. 감사실무장은 감사실무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감사실무원은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와 재정운용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즉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실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재감사를 제청할 수 있다.

1. 감사위원이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에 상당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상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대상단위의 재정운에 상당한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상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감사실무원의 제척) 감사실무원은 자신이 속한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시행에 관여할 수 없다.

제2장 감사시행

제19조(계획 및 공고) 감사위원회는 감사회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괄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실무원 명단 및 감사대상단위별 담당 감사위원 및 감사실무원 편성
2. 감사대상단위
3. 필수 감사 자료 및 자료 제출기한
4. 단위 별 감사 일정
5. 참관인 공개모집 일정
6. 이의신청 일정

제20조(감사시행의 공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시행 공고 후 30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가 완료되지 못한 단위를 담당한 감사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사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후 2주 안에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단위는 해당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계좌번호 및 예금주, 회계 담당자의 이름, 예산안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단위는 자료제출의 기한 내에 다음의 자료를 최소 2부 이상 출력 혹은 복사하여 서면으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 4호와 5호에 한하여 1부만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반기의 예산안(전항의 것과 동일하다면 생략가능)
2. 해당 반기의 결산 내역 요약본 및 세부결산안
3.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서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포함할 것)
4. 증빙서류 (지출금액, 거래처, 지출품목이 모두 포함된 영수증, 전표, 거래내역서 등)
5. 감사대상단위의 단위 대표자 및 회계 담당자의 연락처

③ 모든 감사 자료는 본 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감사대상단위가 자료 제출 기한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차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차선 수단은 반드시 자료 보전이 가능하고 제출 일시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당일 반드시 동일 자료를 3부 이상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재정이 운용된 경우에는 그 항목에 참여한 자의 명부 및 항목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한 재정 운용이 예측하기 힘들었으며, 첨부한 자료에 흠결이 없는 때에는 예산안에 존재하는 항목으로 추정한다.

⑥ 감사대상단위가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 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제출자와 이를 확인한다. 그 후 즉시 봉인하여야 하며, 감사 시행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개봉할 수 없다.

⑦ 감사자료는 감사시행 시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 및 공개할 수 없다.

제22조(증인) 감사대상단위는 원활하고 공정한 감사시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증인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단위의 증인출석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는 때에는 증인 신청에 대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감사범위의 제한) 감사자료 중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의1(별칙) 감사시행이 전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때에는, 담당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위원장은 담당 감사위원을 교체하여 다시 감사시행한다.

제24조(감사시행의 절차) ① 감사의 시행은 감사위원 1인, 감사회의에서 결정한 담당 감사실무원, 감사대상단위의 회계 담당자 및 단위 대표자 각 1인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다만 겸직일 때에는 1인 출석으로도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이 부재한 때에는 감사시행을 진행할 수

없다. 다른 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시행은 감사위원의 지휘하에 이루어진다.

③ 감사실무원은 감사대상단위가 제출한 자료를 검사하여 감사위원에게 보고한다.

④ 감사대상단위의 회계 담당자 및 단위 대표자는 감사시행 당일 참석하여 감사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전항의 보고와 출석인의 소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징계안을 감사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장은 소속 단위의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운용의 판단 기준) ① 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기한에 맞춰 본 시행세칙이 정하는 감사자료를 제출했는가
2. 입출금 내역과 결산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일치하는가
3.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세하고 누락이 없는가
4. 감사대상단위의 재정운용이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었는가
5. 예산안에 존재하지 아니한 항목의 회계 및 재정운용이 부득이한 사유이고, 첨부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가
6. 집행 과정에서 학생회칙 및 기타 관련 세칙의 위반한 사항은 없는가

제26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위원회는 공정한 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집행내역에 대한 사진첨부의 요구

② 감사대상단위가 전항의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해태한 때에는 2회 이하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소명 및 자료제출) ① 삭제 <2023. 3. 16.>

② 소명인의 소명에 대한 인용 여부는 해당 단위 감사위원이 판단하되, 감사시행이 종료되었다라도 담당 감사위원 이외의 타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재소명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명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의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자료제출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의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1일 ~ 3일이 지나면 주의 1회를, 4일 ~ 7일이 지난 때에는 주의 1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증빙서류에 한해 감사시행 당일 제출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자료를 누락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 기한에서 7일이 지났음에도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감사 필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3. 누락된 증빙서류를 완전히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39조에 따른다.

제28조(재감사) ① 재감사는 감사회의에서 감사를 시행한다. 재감사에 따른 사안은 시행하는 때에 심의 및 의결한다. 감사위원이 감사대상단위에 소속하거나 소속하였을 때에는 제16조의 제6항을 따른다.

② 재감사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서 시행한다.

1.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자료의 누락, 오류 또는 소명인의 불출석 등으로 당일 감사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수정·보충해야 할 자료를 감사 진행 현장에서 즉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감사시행에 흠결이 있는 경우
 4. 감사위원장이 감사실무원의 재감사 제청을 인용한 경우
 5.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경우
- ③ 소명인의 불출석으로 재감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주의 2회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감사를 시행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감사 일정 및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29조(특별감사) ① 특별감사란 감사시행의 기간이 아님에도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에 상당한 흠결이 있거나 감사대상단위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정이 발견된 때에 그 사정을 밝히기 위한 감사를 의미한다.

② 전항의 특별감사는 다음의 요청 또는 발의가 있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위원장의 발의가 있는 때
2. 재적운영위원의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의 10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해당 단위 전체 회원 15인 이상의 서명 발의가 있을 경우

③ 특별감사의 시행은 제2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1(예/결산안 부결) ① 대의원 총회에서 분기별 세부 결산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꾸려 14일 이내에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각 단위 학생회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대의원 총회에서 결산안 승인이 부결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꾸려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위원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대상 단위 소속 운영위원은 감사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다.

제3장 감사결과

제30조(감사결과와 보고)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의 완전성과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본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단위에서 제출한 필수 자료 존재 여부
2. 감사 참여자 명단 - 감사위원, 소명인, 참관인 등
3.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자료 평가 결과
4. 감사대상단위의 회계의 흠결과 재정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5. 감사대상단위의 징계 여부 및 관련 내용
6. 감사위원 권고사항 및 총평

② 감사위원은 감사 실시 3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출된 감사결과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감사회의에 상정 후 확정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대상단위에 이를 전달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감사결과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이의신청은 해당 단위 대표자 또는 회계 담당자가 공고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의신청 단위의 대표자 혹은 회계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단위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처리) ① 이의신청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재감사한다.

1. 감사시행의 절차가 회·세칙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실수, 착오를 발견한 경우
3.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자료 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감사결과에 따라 의결된 징계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이의신청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인용 : 감사대상단위가 이의를 제기한 근거와 그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 결과 및 징계 처분에 대해 전면 수정하는 경우
2. 부분인용 : 감사대상단위의 이의신청 내용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징계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3. 기각 : 감사대상단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의 문제가 없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여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에 변경이 없는 경우
4. 각하 : 감사대상단위의 이의 제기가 학생회칙 및 기타 관련 세칙이 정하는 절차 등에 위반이 되는 경우

③ 위 과정에 있어 이의신청 단위에 소속된 감사위원의 의결권은 제외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정족에 흠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이의신청 결과 통보) 감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가 완료된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감사대상단위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4조(일사부재의)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감사결과와 보관)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가 손실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36조(목적) 감사 시행 결과, 감사의 목적과 기준에 미달하는 단위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시정 및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재정 운용 및 자료 관리 등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징계의 대상) 감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감사대상단위를 징계한다.

제38조(징계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확정된 감사대상단위의 징계의결서를 운영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징계의결서에 한하여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의견을 기명으로 기입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받은 2주 이내 해당 감사대상단위의 위원을 제외하여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징계안을 공고한다.

③ 제9조 제5항에 따라 대의원 총회 발제에서 그 안을 확정한다.

제39조(필수적 징계) ① 감사위원은 감사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의 1회 이상의 징계안을 감사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누락된 증빙자료의 금액이 전체 집행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예산안에 존재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집행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거나 그 소명과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3. 누락된 증빙자료에 대한 소명과 증빙이 고의적으로 미흡한 경우

② 감사위원은 감사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3회 이상의 징계안을 감사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누락된 증빙자료가 전체 집행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예산안에 존재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집행이 고의적이거나 소명과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3. 누락된 증빙자료에 대한 소명과 증빙이 고의적으로 미흡한 경우

③ 감사위원은 감사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5회 이상의 징계안을 감사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3항을 이유로 한 재감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변함이 없는 경우
2. 감사대상단위가 감사시행을 거부한 경우

④ 감사위원회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으로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계를 의결할 수 없다.

제40조(징계안의 존중)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때에는 그 안을 상정한 감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내용)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상정한 징계안에 대하여 감사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징계한다.

1. 주의가 1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단위는 주의를 받게 된 사유서와 개선안을 서면으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의가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해당 감사대상단위에 경고를 부과하며, 본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내용에 더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재정운용은 무효이다. 또한 회계 담당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3. 주의가 5회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해당 감사대상단위의 재정운용에 불신임과 그 기한을 결정한다. 본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 내용에 더하여 재정운용에 불신임

을 받은 해당기구는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있어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해당 달의 세부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이를 소명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문서를 개인 정보를 제외하여 학우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추가적 징계) 감사위원회는 징계대상단위가 전조의 제1항 제1호 또는 전조 제1항의 제2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의 2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 징계는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징계의 철회) ① 감사대상단위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선거,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감사대상단위의 구성원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감사대상단위는 징계의 철회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2주 이내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22.9.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아리의 징계)

감사 결과에 따른 동아리의 징계는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세칙』을 따른다.

부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아리의 징계) 감사 결과에 따른 동아리의 징계는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세칙』을 따른다.

0000년 0반기 감사시행공고

1. 감사 대상 기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

2. 감사자료 제출 기한

2000. 00. 00. (화) 23 : 00까지

3. 감사 필수 자료

- 1) 결산 내역 요약본 2부 이상
- 2) 세부결산안 2부 이상
- 3)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서 2부 이상
- 4)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영수증) 1부 이상

4. 감사 일정

5. 감사위원회 구성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000

감사위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감사실무원

감사실무원

000, 000, 000, 000

0000. 00. 24. (화)

0000년도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000

email@mail.com / ☎ 051)

0000년 0반기 감사 참관인 모집

- ① 일시 : 0월 00일(수) 오후 5:00시
- ② 장소 : 사회관 207호 (사회대 학생회실) 및 207-1호 (틈새학습실)
- ③ 관련세칙

④ 감사대상단위의 담당 감사위원 및 담당 감사실무원 명단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문헌정보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사회복지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사회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심리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정치외교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행정학과 : 000 감사위원, 000 감사실무원

⑤ 참관인 신청 및 문의사항

사회과학대학 감사행정위원 (010 0000 0000)

0000. 00. 10. (월)

0000학년도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0000년 0반기 감사결과 보고서 (00학과)

I 기본사항

감사일시	20 년 월 일 (요일)
감사 장소	부산대학교 사회관 호
담당 감사위원	
담당 감사실무원	
회계 담당자	
단위 대표자	
자료 제출 일시	20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요일)

II 필수 자료 검토

● 상/하반기 예산안	
●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서	
● 증빙서류	

회계요약보고	① 전회기 이월액 = 원 ② 하반기 수입액 = 원 ③ 총 수입액 (①+②) = 원 ④ 총 지출액 = 원 ⑤ 최종 잔액(③-④) = 원
--------	---

Ⅲ 감사위원의 결정

결과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 3.
결정	감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 결정사항 없음 ex) 1. 감사대상단위의 회계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00조 및 감사시행세칙 제0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바 주의 3회를 처분함이 타당해 보인다. 2. 전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위의 징계안을 감사회의에 상정한다.

감사위원 이름 (인)

단위 대표자 이름 (인)

감사실무원 이름 (인)

회계 담당자 이름 (인)

감사실무원 이름 (인)

0000년 감사결과 이의신청 공고

① 이의 신청 기간 :

② 이의 신청 요건 :

③ 이의 신청 방법 :

④ 이의 신청 심사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의 신청 단위 대표자 혹은 회계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000 / 000 0000 0000

0000. 00. 00.(수)

0000년도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이의신청 결정문

회계 연도	0000년 상/하반기 정기감사
이의신청 단위	
심사일시 및 장소	
심사내용	이의신청 단위의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내용. 최초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및 감사실무원 명단.
심사결과	
기타사항	

위 결정은 재심의 결과이므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제34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 혹은 사유인 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0000. 00. 00.(수)

0000년도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별지 제7호 서식]

<징계 공고>

징계대상단위 (징계대상단위명)

주 문
(징계내용)

- 1) 근거
- 2) 사실
- 3) 사실에 대한 판단
- 3) 결론

0000. 00. 00.(수)

0000년도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회

사유서 및 개선안

회계 연도	0000년 0반기 정기감사		
단위명		단위 구분	동아리/학과
단위 대표자	0000학과 000	단위대표자 연락처	
단위 회계담당자	0000학과 000	단위 회계담당자 연락처	
징계 내용	주의 N회		
사유서	징계를 받게 된 사유를 설명 주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개선안	사유서를 기반으로 한 개선안을 작성 다음 회기 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본인은 위 작성한 내용에 틀림이 없으며, 향후 원활한 회계를 위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0000. 00. 00.(월)
단위 대표자 000 (인)
단위 회계담당자 000 (인)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000

징계의안

징계대상단위 (징계대상단위명)

주 문

(징계내용)

징계이유

가. 사실관계

나. 근거내용

다. 결론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감사위원 000 (인)

0000. 00. 00.(수)

0000년도 대의원총회 귀중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000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대상단위명 징계안

발의연월일 : 2000. 0. 0.

발 의 자 : 위원

주 문

(근거를 포함한 징계내용)

징계이유

가. 사실관계

나. 근거내용

다. 결론

사회과학대학 감사위원장 000